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37
------------	-------

발의연월일 : 2019. 4. 10.

발 의 자 : 박재호 · 유승희 · 심기준

안호영 · 송기현 · 박 정

최인호 · 전재수 · 위성곤

윤호중 · 강병원 · 김해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제4차산업혁명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혁신 환경을 갖춘 지역이나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입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학 내 산학 협력의 대부분이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있는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 등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하여 대학 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 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를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34호 신설).
- 다.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등은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여 산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46조의8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

제4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8(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물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나 국립대학법인, 과학기술원이 보유하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제34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p> <p>1. ~ 6.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자)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 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 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 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 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 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p>



② · ③ (생략)

<신설>

재산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8(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의 학교  
법인, 국립대학법인 또는 과학  
기술원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  
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  
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국공유 토  
지나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  
센터 및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물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  
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나 국립대학법인, 과학기술원이 보유하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